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 산 호
(중앙대학교)

■ 차례 ■

- | | |
|-------------------|--------------------|
| 1. 서론 | 4. 문화다양성협약의 배경과 의미 |
| 2.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도전 | 5. 결론 |
| 3. 사회통합 정책의 변화 | |

1. 서론

오늘날 세계화는 문화까지도 장벽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화 분야에서의 세계화가 반드시 인류의 행복과 문화의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문화의 세계화가 다양한 세계 문화의 특수성을 침해하고, 문화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2008년 7월 22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문화의 다양성과 유네스코' 포럼에서 세계는 "빈부격차의 확대, 종교분쟁 등 문화다양성을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가 "문화다양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문화발전이

* 본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정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확대해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 시대에 유엔의 교육문화과학국제기구(이하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이하 문화다양성협약)에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33차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인류의 다양한 문화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 채택에 찬성했으며, 국내 법제화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다.²⁾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의 세계화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해 보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초기부터 캐나다와 함께 협약 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프랑스는 이제 이 협약의 국내 법제화 단계를 넘어 정책적 실행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 프랑스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은 더 이상 학술대회의 주제가 아니라 문화 정책 혹은 사회 정책의 현실에 진입한 것이다. 프랑스는 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문화 분야의 국제통상이나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화다양성협약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즉, 프랑스는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자국내의 소수자와 소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이 협약을 자국이 직면한 다문화 사회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해왔던 우리

1) 『중앙일보』, 2008년 7월 23일.

2)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 EU 간의 FTA 협상에서 EU측은 문화다양성협약의 국내 법제화를 FTA 협상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와의 양자 협상체결의 전제조건이 제 3자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협약의 법제화라는 점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라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 만큼 매우 강한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다인종 혹은 다문화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며, 이 협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으며,³⁾ 향후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가 더욱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⁴⁾ 우리나라도 사회통합을 위한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은 국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협약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협약에 대해 국제통상이나 문화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⁵⁾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선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도전 그리고 사회통합 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프랑스의 입장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의 배경과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 차원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의 시사점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도전

오늘날 교통, 수송,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가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인간의 삶의 공간을 전 세계로 확대시켰

3)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은 아시아의 주요한 이주노동력 유입 국가의 위상을 갖게 된다. 1988년 이후 국내 이주자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2006년 3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규모는 80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이른다."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아카데미, 2007, p.29.]

4)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혹은 순혈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6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5) Cf. 서현제, 『문화다양성협약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연구』, Vol.15, No.2, 2006. 최종일,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퇴조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범세계적인 통합 체제의 출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보인다. 세계화는 근대 이후 인간의 기본적인 조직 구조였던 국민국가의 위상을 현저하게 약화시켰고, 나아가 국민적 정체성과 고유성까지도 교란하고 위협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도전은 이제 몇몇 특정 국가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자국 내의 인종적, 문화적 분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처럼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결합으로 국가를 출범시켜 형성된 경우도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 국가에 특정 인종과 문화가 다수 유입되어 형성된 경우도 있다.⁶⁾

프랑스는 원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국가로 ‘문명의 용합체 le creuset de civilisation’⁷⁾ 혹은 ‘유럽 문명의 축소판 le raccourci de la civilisation européenne’으로 불려왔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골족이 정착하여 프랑스 민족의 기본을 이루었고, 기원전 1세기에는 라틴족, 4세기에는 게르만족, 11세기에는 노르만족이 대규모로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유입은 프랑스 문화에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제공했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켈트족으로부터는 개인주의를, 라틴족으로부터는 법과 단호한 질서에 대한 사랑을, 게르만족으로부터는 건설적 재능을, 노르만족으로부터는 진취적인 기상을 물려받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⁸⁾ 한편 코르시카, 브르타뉴 등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6) Cf. 김남국,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in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5호, 2006, p. 4.

7) "la France a été de tout temps un creuset de civilisation: lieu d'échanges entre pays atlantiques et pays méditerranéens..." [Michaud Guy et Kimmel Alain, *le Nouveau Guide France*, Hachette, 1994, p.9.]

지닌 민족이 이주나 합병에 의해서 프랑스에 통합되었다. 이들은 자코뱅주의적 전통⁹⁾을 거부하며 정치적인 분리와 독립을 요구하거나,¹⁰⁾ 혹은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의 보존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¹¹⁾ 그러나 이들은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기존 문화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점차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었고, 프랑스인들도 더 이상 이들을 이주민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후로도 프랑스는 유럽의 지식, 예술, 상업, 자유의 중심지로 이민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이주지였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빈치, 프리마티스 등 이른바 '기술이민'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들이 유입되어 프랑스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¹²⁾ 대혁명 이후에는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다수의 이민자들이 자유를 찾아 프랑스로 이주해왔으며,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규모 이주 노동자 유입이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이미 80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 대부분은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출신이었다. 이들은 프랑스인들과 종교적, 문화적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 없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프랑스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명 손실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적극적인 '국제노동

8) "les Français devraient aux Celtes leur individualisme, aux Romains leur amour du droit et de l'ordre formel, aux Germains leur génie constructif, aux Normands leur esprit d'initiative." [*Ibid.*, p. 17.]

9) '자코뱅클럽Club des Jacobins'은 대혁명 직전에 결성된 정치단체로 자유, 평등, 박애의 대혁명의 이념을 수호했다. 자코뱅들은 1793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프랑스는 '분리되어 질 수 없는 공화국'임을 천명했다.

10) 원래 이탈리아의 제노바의 지배하에 있던 코르시카는 1768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프랑스에 편입되었고, 1790년 프랑스의 행정구역인 도로 지정되었다. 코르시카는 1976년 '코르시카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de la Corse'이 결성되면서 프랑스의 중앙집권체제에 저항하며 분리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11)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는 5세기에 앵글로색슨의 압박을 피해 켈트족이 집단 이주한 지역으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12) Cf.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2004, pp.169-170.

이주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 결과 1931년에 이주 노동자 수가 전체 인구의 7%인 3백만 명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의 필요성에 따라 프랑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제4공화국은 '이민국'을 창설하여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말리 등에서 이주 노동자를 선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한시적인 존재로 여겼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결핍이 해소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누구도 이들의 존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3년의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1974년에 가족의 합류와 정치적 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 이민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귀국보조금을 지원하며 이주 노동자들의 귀국을 독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프랑스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민자의 수는 가족의 합류, 정치적 망명, 불법 이민자의 유입 등으로 매년 6만 명씩 증가해왔다.

1974년 인권운동의 대두와 소수 집단의 권리 주장으로 프랑스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의 가족 합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재결합le regroupement familial' 정책의 실시를 계기로 '기간계약 노동이주'가 '정착이주'로 변화하였으며, 이때부터 프랑스에 이주민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13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했고, 이민자 가족의 합류 제한을 해제하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25만 명의 추가 이민자가 발생했다.¹³⁾ 이후로 집권한 우파 정부는 비교적 엄격한 이민통제정책¹⁴⁾

13) Cf. *Ibid.*, p. 173.

14) 우파의 이민통제정책은 프랑스 내 이민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결혼과 가족재결합제도의 규정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2006년 제정된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loi du 14 novembre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은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주민의 가족 결합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했다. 이러한 이민 통제 조치들로 매년 증가해 오던 이민자 수가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추방당한 불법 체류자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프랑스에서 '제로 이민'은 환상에 불과할 뿐이며,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이민의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대략 400만 명의 이민자가 존재한다.¹⁵⁾ 이는 전체 프랑스 인구의 6.2%에 해당하며, 파리 인구의 13%가 이민자이다. 한편 프랑스는 이민자의 유입을 막을 수만은 없는 실정에 처해있다. 프랑스가 2050년까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만 7천명, 총 147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¹⁶⁾

프랑스에서 다문화 사회의 도전은 주로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 특히 국제노동이주정책과 가족재결합정책으로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들과 비르Beurs라 불리는 이들의 후속 세대에 의해서 촉발되기 시작했다. 무슬림혐오주의를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다소 과장된 발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수는 전체 이민자의 50%를 넘어섰다는 것이 정설이다.¹⁷⁾ 오랜 기간 동안의 흡수와 동화 과정 없이 단기간 내에 프랑스 사회에 병치된 이들은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서 인종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프랑스에 동화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이들은 주로 비전문적이고 저임금 노동을 담당하여 왔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대부분 극빈 소외계층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이들은 계층분리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대도시 외곽에 건립된 빈민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¹⁸⁾ 이민 2

15) 프랑스에서 이민자를 인종이나 종교별로 분류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1872년부터 프랑스는 인구조사에서 거주자들의 종교와 인종 조사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에 근거한 통계의 이용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통계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다. Cf.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in 『프랑스사 연구』 14호, 2006, p.233.

16) Cf. 드바쉬&퐁티에, 김지은 외 2인 역, 『프랑스 사회와 문화 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63.

17) 이들의 숫자는 우파 정치인들에 의해서 500만에서 800만 명까지 언급되기도 했으나, 인구 학자들은 대략 250만에서 370만 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Cf.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in 『프랑스사 연구』 14호, 2006, pp.231-232.

18) 제5공화국에서는 '영세민임대아파트HLM' 건립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가 건립되는 동안 이민자들을 수용할 대규모 임시 주거 단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인

세대와 3세대들의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12%인 것에 비해서 이들의 청년실업률은 33%에 이른다. 이들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빈민지역에 갇혀있는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인으로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완전한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혹독한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갈등을 겪어 왔다. 이렇듯 높은 실업률과 사회문화적 차별로 인한 불만이 소수 집단 문제의 핵심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 동안 이들에게 기회의 평등만을 제공해 왔을 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던 것이다.

이민 1세대들이 프랑스 사회에 인종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들이 외국인이었기에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민 2세대와 3세대들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프랑스는 차량 방화나, 상가 약탈 등 소규모의 인종소요사태를 경험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를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의 도전으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톨레랑스(tolérance)를 주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톨레랑스는 프랑스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덕목으로 타인에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견해나 신념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18세기와 19세기에 톨레랑스가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 ‘공존의 원리’였다면, 오늘날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의 가치관’¹⁹⁾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은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덕목임에는 틀림없다. 유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1995년을 ‘세계 톨레랑스의 해’로 선포했었다. 그러나 톨레랑스는 어디까지나 주류 집단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허용이며, 임의적인 덕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실적인 한

이유로 임시 주거 단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Cf.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2004, p.180.

19) *Ibid.*, p.48.

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일반형사제도에서 시작된 '톨레랑스 제도' 현상은 이미 이주민 정책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²⁰⁾ 소수 집단 역시 더 이상 주류 집단에 톨레랑스를 호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주류 집단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생존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0월 프랑스의 300여개 도시에서 한 달여 동안 발생한 인종폭동으로 프랑스와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거주민의 70%가 무슬림인 파리 근교 클리시 쉬 보아 지역에서 2명의 무슬림 청년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변압기에 감전사하면서 폭동이 시작되었다.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던 무슬림들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발언은 사태를 더욱더 확대시켰다. 그는 공공연하게 무슬림 청년들을 진공청소기로 쓸어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비상사태 법(l'état d'urgence)'을 발효시켜 사태를 진압하였다.²¹⁾ 무슬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위험한 집단' 혹은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여 인종차별적 배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이 사건으로 9천여 대의 차량 방화, 약탈, 2,000여 명의 체포, 민간인 1명 사망, 다수의 부상자 등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일부 프랑스인들에게 무슬림혐오주의를 부추기기도 했으나, 인종차별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의식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소수 집단의 폭력적 도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는 여전히 무슬림 집단의 도전이라는 불안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2007년에도 파리 북부 무슬림

20)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망명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10년 동안 거주한 이주민에게 프랑스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던 제도를 폐지했고, 무슬림들의 일부다처제 관습을 불법화하여 그 동안 묵인해왔던 첫 번째 부인 이외의 부인들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1) 프랑스의 비상사태 법은 1955년 식민지 알제리의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84년 해외 영토인 누벨칼레도니의 소요사태 당시에 한 번 발효되었을 뿐이다. Cf.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in 『프랑스사 연구』 14호, 2006, p.227.

집단거주 지역에서 인종 갈등에 의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학교와 관공서가 불타고,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다양성과 인종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역사적으로 다문화, 다인종 국가들은 소수 집단 수용 방식에 있어서 차별적 배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등을 추구해 왔다. 국가 정책으로서 차별적 배제는 과거 미국의 인디언과 흑인 차별 정책처럼 소수 집단을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며, 동화주의는 소수 집단을 주류 집단에 동화시켜 문화단일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평등과 사회통합을 국가적인 이념으로 추구해왔으며, 전형적인 동화주의를 채택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속지주의를 근간으로 '국민'이라는 개념을 확정했으며,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과는 관계없이 프랑스인으로 인정했다. 프랑스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는 속인주의(Jus sanguinis)와 속지주의(Jus soli)의 전통이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적 취득 조건에 따르면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인이면 적자, 서자, 사생아를 막론하고 프랑스인이며, 부모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속지주의 규정에 의해서 프랑스인이다.²²⁾ 프랑스는 혈통 기반의 민족주의적 국민주의가 아닌 공화주의적 국민주의를 추구해 왔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1조는 1793년에 자코뱅들에 의해서 제정된 공화

22) Cf. 드바쉬&퐁티에, 김지은 외 2인 역, 『프랑스 사회와 문화 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45.

국 헌법의 전통을 이어 받아 프랑스를 “분리되어 질 수 없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인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의지를 표명하고, 공화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프랑스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시민공동체, 즉 특히 모든 사람이 수호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들을 정의하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국가에 결합된 개인들의 총체만을 인정”²³⁾했으며, 개인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 속했다. 그 결과 문화단일성은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되었으며, 문화다양성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받아들이게 했다. 특히 교육제도와 언어 정책은 동화주의 실현의 첨병 역할을 했다. 누구도 공교육기관에서 특수한 정체성을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지 못했다.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며, 프랑스어를 배워야 했다. 또한 ‘통합수용계약Contrat d'Accueil d'Intergration’은 대표적인 동화주의 정책으로 신규 국적 취득자와 프랑스 정부가 맺는 쌍무계약이다. 신규 국적 취득자는 프랑스어 능력 배양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프랑스어 능력을 평가해 상응하는 프랑스어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어는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의 유일한 언어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토대로 간주되었기에 정부는 프랑스어 보호와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²⁴⁾

프랑스 정부는 이민자 집단도 언젠가는 주류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해왔기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실재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마치 없거나 심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단일

23)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p.69.

24) 1992년 프랑스 상원은 만장일치로 헌법 제2조에 “프랑스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1994년 프랑스어 보호와 위상 보존을 위한 ‘투봉 법’을 제정하였다. Cf.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2004, pp.203-205.

문화만이 존재하는 '상상의 공동체(communautés imaginées)'를 만들어 현존하는 객관적인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축소하고 은폐해 왔다.²⁵⁾ 그러나 단일 문화란 문화국수주의가 만들어 낸 상상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이다.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이 역설했듯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류의 프랑스인들이 프랑스가 다문화 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²⁶⁾ 그러나 이들은 프랑스가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은폐정책인 '타조정책(la politique de l'autruche)'으로 일관해 왔다. 타조정책은 타조가 적의 공격을 피해 모래에 머리를 파묻듯이 현존하는 어떤 위험상태를 없애는 것처럼 가장하고 얼버무리는 정책이다. 그러나 극우파 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이 문제를 핵심적인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켰다.²⁷⁾ 또한 이슬람 여학생의 '차도르 사건'은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 학계, 정치계를 뜨겁게 달군 논쟁으로 발전하였다.²⁸⁾ 이후로 소수 집단 통합 문제는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영역이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소수 집단의 주류 사회 편입 기회를 확대하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인종 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비차별의 법제화와 제도 강화를

25) Cf.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p.25.

26) 기 소르망은 "40세 이상의 연령층은 프랑스가 이제 완전한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프랑스 사회가 바뀌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 지식인의 자기반성 없이는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f. 『중앙일보』, 2005년 11월 13일.

27) 이민자들과의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정체성 회복을 정치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전선이 1982년부터 유럽의회선거와 시의원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민자 문제는 프랑스의 핵심적인 정치 쟁점이 되었다. 이민자들을 실업과 치안 문제의 속죄양으로 만드는 국민전선의 논리에 다수의 프랑스인들이 동조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는 국민전선의 르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9%에 이르기도 했다. Cf.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2004, p.184.

28) 프랑스의 비종교성(laïcité) 교육의 원칙에 따라 공교육기관 내에서 학생이나 선생이 자신의 종교를 걸고 드러내는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1989년부터 수차례에 발생한 차도르 사건은 학교에서 이슬람 여학생의 차도르 착용 문제에서 촉발되었다. Cf. *Ibid.*, p.22.

추진했다. 법과 제도의 강화는 불평등이나 차별을 법적, 제도적으로 방지 하려는 것으로 임의적 덕목인 톨레랑스보다 구체적이며 강제적이다. 정부는 차별 퇴치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회균등법'을 제정했고, '통합과 차별퇴치지원기금'을 조성했다. 또한 '차별퇴치와 평등고용청'을 대통령 산하에 설치했다. 인종 차별은 언어적 표현, 자격이나 직업 혹은 거주지에 대한 접근 방해, 물리적 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공적 영역에서 행해진 인종 차별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차별 영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피하는 한편, 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했으며, 노조와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차별에 관련된 증인은 처벌과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 민간 기관들과 '차별퇴치협정'을 체결하여 기관마다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인종 차별 퇴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하나의 문화라는 이념에 얽매어 그동안 도외시해 왔던 인종차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식 사회통합정책의 진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차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차이의 인정은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이다. 동화주의가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고, 소수 문화는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흡수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생존의 권리로 중시하고, 이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비차별의 법제화가 소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이라면 다문화주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이며,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비종교성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파리 도심에 아랍 문화관을 건립하고, 전국에 수많은 이슬람 사원의 걸립을 지원했다.²⁹⁾ 또한 이주민

29) 1965년 당시 4개에 불과하던 이슬람사원과 기도실이 정부의 지원으로 오늘날에는 천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Cf. *Ibid.*, p.25.

밀집 지역의 초등교육기관에서는 이주민들과 동일한 국가 출신의 교사를 임명하여 이주민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동화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정책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4. 문화다양성협약의 배경과 의미

무역 자유화라는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류의 문화적 자산만큼은 상업적인 상품이 아니라 정신적 산물로 자유 무역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프랑스의 일관된 입장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입장을 국제 통상협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199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에서 프랑스는 국제 교역에서 문화적 재산과 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라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문화의 상업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특수성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적 예외의 기본적인 명분이며, 문화적 자산, 특히 영화나 시청각 분야를 자유 무역 체제에서 제외시키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후 문화적 예외는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고,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³⁰⁾

거대 자본과 대량생산을 앞세운 미국의 문화산업과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자국의 문화와 문화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의 협상안에 동조함에 따라 GATT도 1996년 문화적 예

30)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5월 칸 영화제에서 자국의 영상 산업을 개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문화적 예외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통신부 장관이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대통령은 60회를 맞은 칸 영화제의 지속적인 성공은 자국 문화의 보호에서 비롯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며, 문화적 예외를 구현하는 프랑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를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세계는 GATT를 대체하여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국제무역기구(이하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WTO는 문화자산, 특히 TV, 시청각, 영화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2000년의 WTO 재협상에서도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를 재확인했다.³¹⁾ 이후 프랑스는 국제 통상협상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la diversité culturelle'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문화적 예외인 것이다. 문화적 예외가 국제통상에서 문화 분야를 제외하지는 비교적 방어적 입장이라면, 문화다양성은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개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하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이다. 또한 문화다양성 이념은 약소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수 문화의 보호와 증진을 추구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문화다양성 이념을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86년 유엔총회는 1988년부터 10년간을 '문화적 발전의 10년'으로 선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도 '문화와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를 설립하여 1995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문화다양성을 '생물다양성'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확인했으며, 생물다양성이 자연자본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듯 문화다양성은 사회문화자본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생물의 종(種)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그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인류의 값진 유산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³²⁾ 또한 문화다양성을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으로

31) 한편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는 국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정체성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문화의 유입을 제한하면서도 자국의 문화를 별다른 제약 없이 문화 약소국에 침투시켜왔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문화다양성을 주창함으로써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2)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이 자연의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듯이, 오직 적절한 문화 정책만이 창조적 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하고 문화적 동질화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

간주하고, 문화의 세계화가 인류의 공존을 심각하게 침탈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유네스코는 문화적 소비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의 폭이 점차 협소해지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해 왔다. 그러나 문화의 공급에 있어서 문화 강대국의 독점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영화는 세계 영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세계 미디어시장이 역시 몇몇 다국적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1년 6월에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문화장관 회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법적 규정 마련에 있어서 유네스코에 선도적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³³⁾ 이에 따라 2001년 11월 2일 프랑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31차 총회는 12개의 원칙을 담은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에 이른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의 모태가 된 이 선언은 문화다양성은 "단지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³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세계문화다양성선언 제1조는 문화다양성을 생물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공동 유산'³⁵⁾임을, 제2조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선언했다.³⁶⁾ 이렇듯 문화다양성의 보호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회, 2008, p. 114.]

33) Cf. <http://confcuuture.francophonie.org>

34)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3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p. 285.

35)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1조, *Ibid.*, p.284.]

36) "점점 다양해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 및 집단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2조, *Ibid.*, p.284.]

실현하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2003년 프랑스와 캐나다 주도로 결성된 '세계문화장관회의체'는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범을 담은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2003년 4월 제16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프랑스, 캐나다, 독일, 멕시코, 세네갈 등 8개 국가가 발의한 유네스코의 '문화협약추진' 계획을 58개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1984년에는 유네스코를 탈퇴했던 미국이 이러한 국제 문화협약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재가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의 찬성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3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면 발효되는 이 협약은 2007년 3월 18일 3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므로써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현재는 8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보호와 발전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 받고 있다.

문화는 어떤 사회 집단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인 특징 전반에 관한 것이며, 예술, 문학, 생활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등을 포괄하기에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대상을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의 문화가 아니라 이를 경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으로 특징했다. 즉,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문화적 표현은 다양한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향유 등을 포괄하며,³⁷⁾ "문화콘텐츠를 지닌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물"³⁸⁾이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그 물질성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언

37)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본문 제4조 1항, *Ibid.*, p.296.]

38)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본문 제4조 2항, *Ibid.*, p.296.

제나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교환, 전파, 확산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협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문화적 표현은 다른 유형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당사국들 간에 전해지기 때문에 문화다양성협약은 국제협력이나 국제통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이 협약의 국제협력에 관한 권리와 의무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문화 개발의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자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당사국은 공공, 민간 부문, 비영리 기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창조적 능력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장려해야 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³⁹⁾ 한편 문화다양성협약이 무역 자유화라는 WTO의 ‘국제통상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당사국마다 이 협약에 근거하여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다양성협약이 당사국의 보호주의적인 문화정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는 본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⁴⁰⁾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정책의 균형성과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문화적 표현은 당사국 내부의 집단 혹은 사회 간에서도 전해지기 때문에 문화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의 사회통합정책과도 연관되어 진다. 문화다양성협약 전문 10항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⁴¹⁾ 본문 제2조 1항은 모든 개인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표현 및 정보통신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⁴²⁾ 동시에 문화다양성을 인

39)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장려해야 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본문 제11조, *Ibid.*, p.301.]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전문 8항, *Ibid.*, p.295.

4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전문 10항, *Ibid.*, p.292.

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했다. 본문 제2조 3항은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³⁾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중요한 특성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⁴⁴⁾임을 인식하고 있다. 전문 4항은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것”⁴⁵⁾을 확인했다. 또한 당사국의 국내적 차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문 제7조 1항은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에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및 배포와 그 활용을 위한 기회 제공”⁴⁶⁾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다양성은 국제통상이나 문화정책 차원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성격에 강하게 띠고 있다. 그동안 문화 강대국들은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높은 관심을 두었을 뿐 소수 문화의 보호와 육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는 문화의 세계화가, 국내적으로는 주류 문화 중심의 문화단일화가 심화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소수 집단의 문화적 자산 역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문화다양성의 보장이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을 담보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향후 문화다양성협약이 지니게 될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당사국 내에서의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42)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본문 제2조 2항, *Ibid.*, p.294.]

4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본문 제2조 3항, *Ibid.*, p.294.]

4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전문 1항, 3항, *Ibid.*, p.291.

4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전문 3항, 4항, *Ibid.*, p.291.

46)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본문 제7조 1항, *Ibid.*, p.298.

있는 이 협약은 다문화 사회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협약의 국내 법제화를 계기로 문화 정책의 현실에 문화다양성협약의 이념인 다문화주의의 수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주류 집단의 소수 문화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교육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강화시켰고, 사회통합의 주요 거점과 문화다양성 창조의 기능을 수행할 ‘국민이민문화관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을 개관했다. 또한 대중매체, 특히 방송에서의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을 규정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전문 12항에 부응하여 2006년에 제정된 ‘기회균등 법’은 대중매체에서 문화다양성 확보, 차별방지, 사회통합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하얀 TV’로 불렸던 백인 위주의 방송도 다양한 인종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유색인종 진행자들과 이민자들의 삶과 문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등장도 빈번해지고 있다.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⁴⁷⁾을 확인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이념에 따라 다언어주의의 수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주민 자녀의 모국어 교육과 아울러 지방의 고유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결론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이주해 왔음에도 문화단일성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 이는 유입된 문화적 이질 요소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흡수와 동화 과정을 거쳐 프랑스 문화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공화주의 가치를 근간으로 소수 집단을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는

47)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전문 14항, *Ibid.*, p.292.

동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의무의 동등함을 인정하고, 프랑스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사회통합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로 주류의 프랑스인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특징을 가진 다수의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정착하면서 소수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주자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흡수와 동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프랑스 사회에 혼성되고 병치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주민 통합정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소수 집단을 동등한 프랑스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오직 평등한 시민만이 존재한다는 프랑스식 사회통합 정책의 이상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등한 시민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프랑스는 인종폭동이나 소요사태 등으로 나타나는 소수 집단의 도전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소수 집단에 대한 인종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비차별의 법제화와 제도의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에 이어 문화다양성 이념을 주창하면서, 이를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문화와 문화산업의 보호 이외에도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다양성협약 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국내 법제화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를 반영하여 사회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등을 개혁해 왔다. 프랑스가 원칙적으로 동화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정책에 따라 다문화주의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프랑스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동화주의에 근거한 사회통합정책을 구사해 왔다. 향후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상이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협약의 이념과 원칙이 국가정책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주류 집단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류 집단은 문화국수주의의 산물인 단일 문화 혹은 단일 민족에 대한 환상과 집착을 버리고, 문화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국,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in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5호, 2006.
-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in 『프랑스 사연구』 14호, 2006.
- 박단, 『프랑스의 문화전쟁 - 공화국과 이슬람』, 책세상, 2005.
- 엄진한,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in 『한국 사회학』 제41집 3호, 2007.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도서출판 한올아카데미, 2007.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 이기라, 양창렬,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그린비, 2007.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 드바쉬&퐁티에, 김지은 외 2인 역, 『프랑스 사회와 문화 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도서출판 강, 2004.
-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연구』, vol.15, No.2, 2006.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 최종일,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2006.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in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2008.

Amselle Jean Loup, Vers un multiculturalisme français, Paris, Flammarion, 1996.

Assouline David, Mehdi Lallaoui, Un siècle d'immigrations en France: 1945 à nos jours, Paris, Syros, 1997.

Bayart Jean-François, L'illusion identitaire, Paris, Fayard, 1996.

Bernard Philippe, Immigration: Le défi mondial, Paris, Gallimard, 2002.

Gastaut Yvan, L'immigration et l'opinion en France sous la 5e République, Paris, Seuil, 2000.

Michaud Guy et Kimmel Alain, le Nouveau Guide France, Paris, Hachette, 1994.

Regourd Serge, L'exception culturelle, Paris, PUF, 2002.

Taylor Charles, Multiculturalisme. Différence et démocratie, Paris, Flammarion, 1997.

Temime Emile, France, terre d'immigration, Paris, Gallimard, 1999.

Weil Patrick, La République et sa diversité, Paris, Seuil, 2005.

〈Résumé〉

La politique d'intégration sociale de France
et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d'UNESCO

LEE San Ho

L'immigration en France est un phénomène ancien; depuis les temps préhistoriques, des groupes ethniques et raciaux très divers se sont installés successivement en France, sous formes d'invasion ou d'infiltration. Ils ont progressivement constitué le peuple français. Donc la France a été de tout temps un creuset de civilisation ou un raccourci de la civilisation européenne. La Révolution française a ouvert la patrie de la liberté aux exilés venus de toute l'Europe. La révolution industrielle a provoqué au milieu du XIXe siècle une immigration de masse, essentiellement européenne. L'infiltration des cultures diverses a enrichi la culture française sous une apparente unicité. Au cours des âges, la France a poursuivi toujours la République indivisible, et elle a gardé cette unicité culturelle. Mais, au cours du XXe siècle, beaucoup d'immigrants maghrébins qui ont eu le propre racial, religieux et culturel, et qui se sont discernés distinctivement d'avec les français majoritaires, sont entrés en France pour des raisons économiques, politiques et sociales. Et ils ont

commencé à former une communauté musulmane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C'est ainsi que la diversité culturelle s'est manifestée de plus en plus en France.

Depuis la Révolution française, la France a persévéré à bien l'assimilationisme républicain dans la politique d'intégration sociale en assimilant les immigrants à la société majoritaire. Donc le gouvernement français a refusé de reconnaître la diversité culturelle et la discrimination raciale. La politique d'intégration sociale de France a été dans un état de crise; les Maghrébins ont soulevé souvent des émeutes dont les principales causes étaient la différence culturelle, la discrimination raciale et le problème économiqu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dû reconnaître la discrimination raciale et la diversité culturelle qui existent actuellement. Il a réformé les règlements et les systèmes contre le racisme et le chômage. Et, au moment de la conclusion de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d'UNESCO, le gouvernement français a commencé à appliquer le multiculturalisme à la politique d'intégration sociale. Cette Convention que la France dirigeait avec le Canada, a pour but de protéger et encourager la diversité culturelle de l'intérieur des Parties. Pour réussir à réaliser la politique d'intégration sociale, les Parties doivent faire activement l'application de l'idée et les principes de cette Convention à la politique réelle.

주 제 어 : 문화다양성(la diversité culturelle),
사회통합정책(la politique d'intégration sociale),
동화주의(l'assimilationisme),
다문화주의(le multiculturalisme),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투 고 일 : 2009. 3. 25.

심사완료일 : 2009. 4. 30.

게재확정일 : 2009. 5. 6.